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1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제13차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사항으로 새마을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“불미스러운 행위”, “품행불량”이라는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며,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조항의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,
- 나. 2001년10월20일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의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이 불필요하게 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 중 “중·고등학교”를 “고등학교”로 한다.
- 나. 제4조(추천) 중에 “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(이하 “구문고지부회장”이라 한다)”로 추천 확대
- 다.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“불미스러운 행위”, “품행이 극히 불량” 문구를 각각 삭제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,  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.
- 라. 기 타
  - (1) 입법예고 : 2006. 1. 19 ~ 2006. 2. 8
  - 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중·고등학교”를 “고등학교”로 한다.

제4조(추천) 중 “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(이하 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(이하 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 및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(이하 “구문고지부회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(지급 및 정지)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그만둘 때
3.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<u>중·고등학교</u>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추천)장학생은 매학년마다 <u>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회장(이하 "구협의회장"이라 한다)과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(이하 "구부녀회장"이라 한다)</u> 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영등포구지회장(이하 "구지회장"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</p> <p>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</u>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<u>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/u></li> <li>4.~ 5. (생략)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고등학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4조(추천)----- <u>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회장(이하 "구협의회장"이라 한다)과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(이하 "구부녀회장"이라 한다) 및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(이하 "구문고지부회장"이라 한다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9조(지급 및 정지)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그만둘 때</u>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/u></li> <li>4.~5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